

무배당 W 변액연금II보험 plus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 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

- 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 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계정 보험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3. “특별계정” 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4. “펀드” 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6. “기납입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나 초기보증연금기간에는 직전 기납입보험료에서 초기보증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기납입보험료로 하며, 계약자가 중도에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계약자가 중도에 인출한 경우에는 제40조(적립액의 인출) 제3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 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초기보증연금” 이라 함은 미리 약정한 기간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거치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 초기보증연금을 지급하는 미리 약정한 기간을 “초기보증연금기간” 이라 합니다. 또한 최저적립금은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특별계정운용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10. “초기보증연금 보증비용” 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초기보증연금 및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의 최저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 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 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 와 “연금계약 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 라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 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초기집중 종신연금형, 초기집중 상속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④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됩니다.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후 초기보증연금,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의 최저적립금 및 기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후 초기보증연금} = \text{감액전 초기보증연금}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text{감액후 최저적립금} = \text{감액전 최저적립금}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text{감액후 기납입보험료} = \text{감액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전에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장하더라

도 계약 체결시에 회사가 보증한 초기보증연금 및 초기보증연금기간이후 최저적립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형태는 제1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초기집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지난 이후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 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초기보증연금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초기보증연금을 지급
3.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초기집중 종

신연금 및 초기집중 상속연금을 모두 생존연금이라 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초기보증연금기간은 10년입니다.
- ④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생존연금은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지난 후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 동안의 특별계정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 계약자적립금을 보증합니다.
- ⑤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의 책임준비금 적립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은 연복리 2%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0.5 \times \text{시장금리} + 0.5 \times \text{운용자산이익률}$$

(2)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직전 3개월의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을 각각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text{시장금리} = \frac{A_1 + A_2}{2}$$

A_1 : 통화안정증권(364일)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_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_1)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i(-3)$ 은 직전 3개월, $Mi(-2)$ 은 직전 2개월, $Mi(-1)$ 은 직전 1개월 이율

- 1) 통화안정증권(364일)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364일)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 2)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 3)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산출 월의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합니다. 단, 비정기적인 수익 및 비용(유가증권평가손익 및 매각손익 등)은 제외합니다.

$$\begin{aligned} & \text{운용자산수익률} \\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2/6) \times 100}{[\text{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투자지출율} \\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2/6) \times 100}{[\text{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ligned}$$

- 4)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장래 예상수익률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4.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18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및 초기보증연금기간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⑤ 제4항에서 해지신청일에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해지신청일이 지난 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유지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초기보증연금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2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채권형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인덱스주식형 : KOSPI 200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재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및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입비율 선택시 인덱스주식형은 25%이상 50%이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하며, 투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24조 【펀드 적립금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연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 후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적립금 비율은 25% 이상 50% 이내로 제한되며, 5%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② 펀드적립금의 이전시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적립금 비율은 1회당 5%씩만 높일 수 있습니다.

③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분기마다 계약자의 펀드선택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

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단,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제①항에 따라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 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27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 이전 시 공제합니다.

제25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26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①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 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초기보증연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제③항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단,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한 임의해지는 제외)
3. 펀드 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4. 초기보증연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5.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27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4조(펀드 적립금 이전)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28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2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 【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2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4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6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초기보증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를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8조 【보험금 받는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0조 【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인출금액은 인출후 계약자 적립금이 일시납보험료의 30% 해당액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후 초기보증연금, 최저적립금 및 기납입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후 초기보증연금} = \text{인출전 초기보증연금} \times \frac{\text{인출후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

$$\text{인출후 최저적립금} = \text{인출전 최저적립금} \times \frac{\text{인출후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

$$\text{인출후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후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

④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됩니다.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을 따릅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 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의 구분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2. 지급내용

구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전 보험기간	일반사망 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연금지급 개시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5% + 계약자 적립금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기간	일반사망 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초기보증연금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5% + 계약자 적립금

구분	금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전 보험기간	초기보증 연금기간	초기보증 연금	초기보증연 금기간직후 최저적립금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기간	초기보증 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	초기보증연금 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6~9년	10년	매년 일시납보험 료의 10.0%	일시납보험 료의 10.0%	
			10년	10년	매년 일시납보험 료의 11.0%	일시납보험 료의 5.0%	
			초기집중 종신 연금형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생존연금 (약관 제13조 제3호)	초기보증연금 기간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초기집중 상속 연금형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지급)			

- 주)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지난 후 계약자 적립금(단,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적립금)을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지난 후 생존연금의 계산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4. 이 보험의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7조 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초기 보증 연금 및 생존 연금 (제13조 제2호 및 제3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공시이율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약 환급금 (제18조 제1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 일반계정으로 이체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